초광역특구법이 가장 크게 악화할 젠더·노동·건강

젠더와 노동건강권센터

지역의 발전을 위한 법이 아니다

노동권과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노동시간 유연화와 비정규직·불안정노동의 확산, 보건의료·돌봄·주거 같은 공공영역을 기업에 내주려는 법이다.

초광역특구법에는 여성, 젠더, 소수자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피해는 여성과 소수자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작동한다.

우리는 누구의 임금이 깎이는지, 누구의 노동시간이 늘어나는지, 누가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 권리를 잃는지 계속해서 제기해야 한다.

규제완화의 끝판왕

“이 법은 … 규제특례에 있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3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다른 법보다 우선하는 규제특례를 적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이 법을 추진했다. 당시에도 무급휴일 허용·파견업종 확대 같은 노동유연화, 교육과 의료 공공성 훼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밀어붙였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초광역특구법이란 이름으로 이를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경총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안았다

경영자총연합회가 요구해온 것

노동시간 유연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파견업무 및 기간제한 완화

외국인 노동자 특구 우선 배정

정부의 발의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을 확대하고,
유급휴일과 보상휴가제 적용을 완화·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정 산업에 한정하지 않고 전방위적인 규제완화와 기업특혜를 제공하려 하며, 기후와 농업, 교육, 환경 규제 모두를 완화하고 있다.

특구라는 이름의 예외

906 → 6,477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한시적으로 확대된 뒤에도 그 기준이 유지되고,
인가 건수가 2019년 906건에서 2021년 6,477건으로 급증했다.

‘예외’가 보편화된 사례들은 이미 많다.

특구에서만 규제완화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국민의힘 입장 역시,
권리의 예외를 보편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 확대의 직격탄은 여성에게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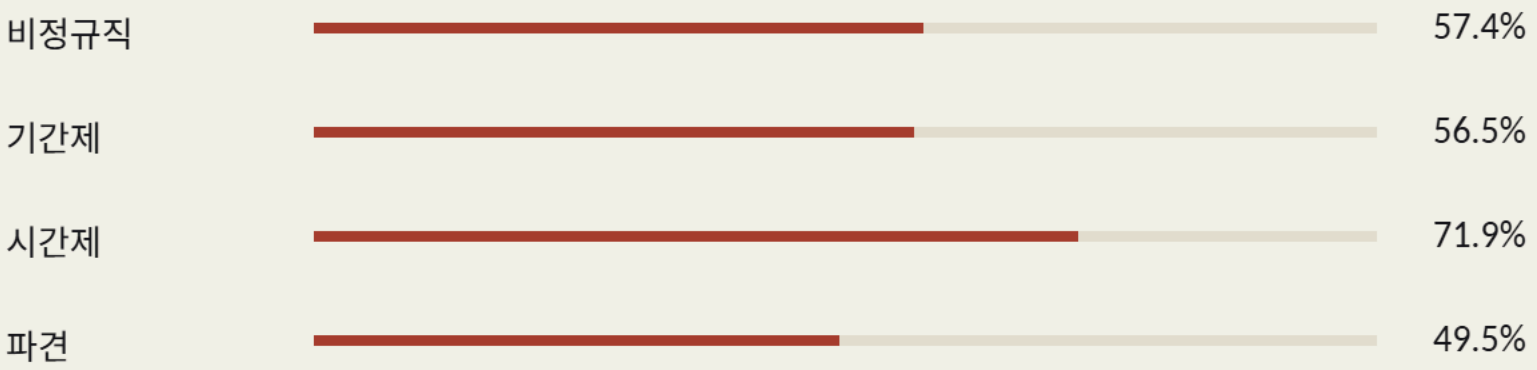

이미 여성노동자 다수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에 놓여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청년 여성들은 지역을 떠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를 감수하며 남거나,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광주형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광주형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정주할 수 있는 집과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 연봉을 1/2 수준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노동자들을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연봉만 줄었고 약속한 집과 차량은 제공되지 않았다.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해 달라 요구하며 박스를 깔고 앉아서 잠깐 쉰 노동자에게 사측은 징계를 내렸다.

그나마 만들어진 저임금 일자리는 제조업, 완성차 중심이라는 명분을 띤 남성의 일자리였다.

반도체 호황이 정점일 때

+7,000

남성 취업자 · 2026년 3분기

−8,000

여성 취업자 · 같은 기간

등록공장 24만 107명 중 여성 25.9% · 성별 고용률 격차 16.4%p(1년 새 1.3%p 확대) · 지자체 비교 2020년 10위 → 2025년 12위

SK하이닉스 공장이 많이 가동되고 있는 충청북도의 경우, 반도체 생산량과 영업이익은 빠르게 늘어났지만, 고용은 그만큼 늘지 않았고 노동자의 임금 수준도 감소했다.

반도체 호황이 정점일 때 청년 여성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다.

아파도 쉴 수 없다

휴식권 후퇴 역시 여성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월차휴가 적용을 배제하고 무급휴일을 확대하며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구조에 놓인 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초과노동을 반복해야 한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 어려워지고, 휴식은커녕 최소한의 건강과 안전조차 보장받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독박돌봄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이중의 굴레를 감당하거나, 직장을 떠나야 하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를 강화하는 초광역특구법

현재의 고용허가제(E-9)에서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나마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초광역특구법을 통해 이주노동자 우선 배정이 가능해지면 이러한 절차를 우회할 수 있게 된다.

초광역특구법이 정주 지원이라고 내세우는 내용은 주택건설용 토지 우선 공급과 주택 공급 특례 등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할 때 활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내보낼 수 있는 노동력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공공성은 어디로?
의료와 돌봄을 기업의 이윤에 내맡길 것인가

초광역특구법에는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의료와 공공 돌봄에 관한 내용도 없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외하고,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단 하나도 없다.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역시 심각하다. 초광역특구법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환자 진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불안정해지는데 돌봄의 공공성마저 후퇴한다면, 그 공백은 결국 여성의 무급노동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하고

아프면 치료받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초광역특구법은 지금당장 폐기되어야 한다.